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2가합508672 판결 [계약보증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찬, 우정우

피고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양동혁, 이성현

변론 종결2024. 8. 21.

판결 선고2024. 10. 1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87,350,175원 및 그중 83,6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7.부터 2022. 2. 15.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1,8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61,950,175원에 대하여는 2022. 2. 16.부터 2024. 10. 16.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돈 중 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88,914,519원 및 그중 83,6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05,314,51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축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 주식회사(이하 '원발주처'라 한다)로부터 서울 종로구 E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주차설비의 설계, 제조,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기계식 주차기기 납품·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F의 계약이행채무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

원고는 2020. 12. 29.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F를 비롯하여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에 현장설명서(이하 '이 사건 현장설명서'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이 현장설명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설명서

1. 공사명: G 오피스텔 신축공사

4. 시행사: D 주식회사

5. 원도급사: 원고

6. 하도급 공사명: 승강 설비공사

12. 계약조건:

③ 공사비 지불조건 : 계약 시 20%, 자재 반입 시 30%, 설치 완료 시 40%, 완성검사(필증수령 시) 10%

● 첨부: 1. 도면 및 시방서, 2. 공내역서, 3.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4.

관련서류(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및 우선순위

원고를 "갑"이라 칭하고, 하도급 시공사를 "을"이라 칭한다.

2. 공사수행의 의견조정

공사수행 상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을"은 "갑"과 공사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며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추후 정산처리 한다.

4. 견적조건

2) 물가연동에 따른 단가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며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을 검토하여 견적에 반영한다.

8) 인원 투입계획은 "갑"의 지시에 따라서 조정되며, 당 현장의 공정에 적극 따라야 한다.

5. 설계변경사항

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갑"의 서면지시에 의하며, 일체의 단가 변경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물량정산은 설계변경수량 확정 시 변경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물가 연동제는 미적용한다.

7. 공사 관련 제출 및 승인

1) 착공 전에 NET WORK 기법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정의 상호 관련, 장비의 반입, 반출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11. 연관대책

4) 연관 공종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공하고 타 공종의 시공 부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을"은 시공자에게 변상 조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갑"이 합당한 금액을 산정하여 기성금액 지불 시 공제한다.

20. 계약 후 제출서류

1) 공정표 및 직원조직도

2) 시공계획서

① 공사진행 및 공법

■ 특기사항

1. 견적조건

7)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순서·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통사항

11) "을"은 공정, 품질, 안전, 환경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착공 7일 전까지 당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시공 계획 발표회를 1회 실시한다.

12) "을"은 현장설명 후 입찰 전에 물량 및 단가를 재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완료 후에는 이에 대한 물량 및 단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현장관리

2)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포기하여야 한다.

① 담당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공사추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수차례 경고에도 시정치 않을 경우

6. 공정관리

- 1) 공사 계약 전 반드시 현장과 협의한 공정대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공정표라 한다.
- 2) "을"의 위 계약공정표는 기상, 작업, 기타 변화 가능한 조건을 모두 감안한 공정표로서 "갑"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며, 위 계약공정표의 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공기지연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 3) "을"의 공기는 공정표에 명기된 각 공정별 기일로 하며, 전체 계약일정과는 무관하다.

12. 기타

- 6) 현장 자재 반입일로부터 기기조립 90일 설치 완료하며, 시운전, 조정 및 완성검사 20일 이내 원고에게 공사용 사용승인 후 인도하여야 한다(완성검사 준공 30일전 기준)
- 7) 현장 자재 반입일은 [2021. 07. 01.]을 기준으로 설치계획수립 및 설치(총 80일)를 진행한다.
- 11) 주차기기 설치 완료 후 내부 옹벽 단열재(PF-T60) 설치되오니 장비작동, 운행(교육포함)을 협조한다.

다.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선금금 지급

원고는 2021. 1. 29.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피고 F와 계약금액을 4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4. 7. 피고 F에 선금금으로 8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지체상금률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납품기한

■ 일반조건(이하에서 '계약자'는 원고, '계약상대자'는 피고 F를 가리킨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제안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시방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게 귀속한다.

제8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승인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대금 완납 시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지체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지체된 부분에 상응하는 물품가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향후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시기 지연 및 계약자에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본조 제1항의 지체상금과 별도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약자에 보상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보상하는 손해배상액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대상 목적물의 계약대금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해당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약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특수조건

제3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체결 당시에 물가변동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계약이행 기간 중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조(현장설명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견적 당시 협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각 세대별 납품 일정을 현장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오류가 없도록 자재 생산, 납품하고, 현장 납품 시 타 공종과 마찰이 발생치 않도록 협의 진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이행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C은 2021. 2. 25. 피고 F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증금액을 41,800,000원, 보증기간을 2021. 1. 29.부터 2022. 7. 31.까지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계약보증금 청구

피고 F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5조,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F와 위 하도급계약상 계약보증금 지급의무를 보증한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약벌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4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1) 선금금 반환 청구 피고 F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피고 F에 선금금으로 83,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F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선금금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체상금 청구 피고 F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도급 공사가 72일 지연되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지체상금률은 0.1%이므로, 피고 F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체상금 30,096,000원(= 72일 × 공사금액 418,000,000원 × 1/1,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금 청구 피고 F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F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가 H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후속 하도급계약(이하 '후속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지출한 추가 비용 170,500,000원(= 후속 하도급계약 금액 588,500,000원 -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금액 418,000,000원, 이하 '하도급업체 교체 비용'이라 한다)

② 피고 F의 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공사기간이 72일 연장됨으로써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간접노무비 및 경비 176,332,000원

③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원고가 나머지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한 돌관공사비용 등 추가 하도급 공사비 186,586,519원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 F는 원고의 공정 및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착수하고, 공정표에 명기한 각 공정별 일정을 준수하여 현장자재 반입일로부터 90일 내에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F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원도급 공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민법 제544조 제1항 등에서 정한 해제사유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2021. 11. 12.과 2021. 11. 23. 피고 F에 계약이행을 촉구하면서 2021. 11. 30.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를 밝혔고, 2022. 1. 7.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2차 해제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21. 11. 30. 또는 늦어도 2022. 1. 7.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피고들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납품기한은 2022.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착공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 F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현장 반입(착공) 일정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F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체한 사실이 없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해제 통보는 부적법하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하고, H와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 F는 답변서의 송달로써 원고의 이행거절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

나.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착공 시기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표지에는 '납품기한'이 '계약일로부터 2022. 7.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착공일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8, 19, 20, 22, 2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 결과(각 감정보완 결과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21. 7. 1.경 원고가 요청하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에 자재를 반입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원도급 공사는 오피스텔 1동(지하 2층, 지상 16층)과 기부채납건물 1동(지상 3층), 지하철 엘리베이터 연결통로 공사1)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일부로 진행되는 공사로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후속 공사(벽체단열재공사, 소방설비공사, 지하주차장 마감공사,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설공사 등)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수행하는 공정에 맞추어 주차기기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3조(현장설명서)는 '피고 F는 원고가 견적 당시 협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각 세대별 납품 일정을 현장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오류가 없도록 자재를 생산·납품하고, 현장 납품 시 타 공종과 마찰이 발생치 않도록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견적 당시 협의한 내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현장설명서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거나 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설명서 중 일반시방서 제2조는 '공사수행 상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피고 F는 원고와 공사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며,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추후 정산처리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조 제8항은 '인원 투입계획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서 조정되며, 당 현장의 공정에 적극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 2항은 '착공 전에 NET WORK 기법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정표에는 각 공정표의 상호 관련, 장비의 반입, 반출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현장설명서 중 특기시방서 제1조 제7항은 '피고 F는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순서·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F는 원고의 지시 또는 승인된 공정표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일반시방서 제11조 제4항은 '연관 공종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공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고, 위 특기시방서 제12조 제11항은 '주차기기 설치 완료 후 내부 옹벽 단열재(PF-T60) 설치되오니 장비작동, 운행(교육포함)을 협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 위 일반시방서 제4조 제8항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 F는 원고의 현장 공정에 적극 따라야 하고, 연관 공종에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한편, 위 특기시방서 제6조 제3항은 '피고 F의 공기는 공정표에 명기된 각 공정별 기일로 하며, 전체 계약일정과는 무관하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6항은 '현장 자재 반입일로부터 기기조립 90일 설치 완료하며, 시운전, 조정 및 완성검사 20일 이내 원고에게 공사용 사용승인 후 인도하여야 한다(완성검사 준공 30일전 기준)'라고 정하고 있고, 제7항은 '현장 자재 반입일은 2021. 07. 01.을 기준하여 설치계획수립 및 설치(총 80일)를 진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F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제출한 예정공정표에는 착공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공정별 기간만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3호증 11쪽).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표지에 기재된 납품기한(2022. 7. 31.)과 무관하고, 현장 자재 반입일은 2021. 7. 1.을 기준으로 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차기기 설치가 완료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④ 2020. 12. 22. 작성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당초 공사예정공정표(이하 '당초 공사예정공정표'라 한다)상 공사기간은 2020. 7. 1.부터 2022. 8. 31.까지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표지에 납품기한으로 기재된 2022. 7. 31.은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준공일정에 준하여 형식적으로 기재해 둔 날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공정에 필요한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2022. 7. 31.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실제 납품기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유사한 공정인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의 경우에도, 계약서상 납기는 2022. 7.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21. 10.경 착공한 뒤 2021. 12. 15.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시행하여 2021. 12. 18.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았다.

⑥ 감정인은 2024. 1. 18.자 피고 측 1차 감정보완 회신에서 '하도급계약기간이 18개월로 정해져 있다고 하여도, 공사 전체 일정과 특기시방서상 현장 자재 반입일로부터 기기조립을 90일 내에 설치·완료하며, 시운전 조정 및 완성검사를 20일 이내에 마친다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이후 잔여기간은 주차타워와 건축 마감공사 및 소화설비, 전기설비공사를 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해제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에서 16호증, 을 제1에서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가), 나)항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F에 주차기기 자재 반입일을 2021. 7. 1. 이후인 2021. 9. 27.로 정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피고 F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일정에 맞추어 자재를 반입하는 등으로 공사에 착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원고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착공을 지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제2호(피고 F의 귀책사유로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6호(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 F의 착공 지연

다음과 같이 원고는 2021. 8.경부터 계속해서 피고 F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F는 계약서상 납품기한은 2022. 7. 31.까지라고 주장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의 착공 요청을 거절하였다.

① 원고는 2021. 8. 30. 피고 F에 '현재 골조공사 옥상층 바닥 타설 완료(2021. 8. 16.)하여 마지막 옥탑층 작업이 진행중이며, 옥탑층 타설 예정일은 2021. 9. 13.이오니 참고하시어 2021. 9. 27.까지 자재를 입고하여 주시고, 2019. 9. 15.까지 설치팀을 배치하시어 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 후 공사담당자와 업무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한, 원고는 2021. 9. 30.에도 피고 F에 아래와 같이 2021. 11.에 주차기기 자재를 입고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2. 당 현장은 9월 말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3. 2021. 8. 30.자 공문으로 자재투입 및 인원투입을 독려하였으며,

4. 2021. 7. 20. 현장 미팅 시 8월 말 골조완료 예정으로 자재 및 인원투입 준비를 요청하였으나,

귀사는 2022년 공사진행을 요구하여(당사가) 공사수행실정상 불가함을 통보하였음에도,

5. 2021. 9. 28. '현장 입고 시 자재야적 및 진입관계' 관련 미팅 시 귀사의 영업담당자 및 공사담당자는 계약상 2022. 7. 공사완료로 되어 있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자재 투입 일정에 대해서는 모호한 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이 사건 현장설명서 제12조(기타) 제6항(현장 자재 반입일로부터 기기조립 90일 설치 완료하며 시운전 조정 완성검사 20일)과 제7항[현장자재 반입일은 2021. 7. 1.을 기준하여 설치계획수립 및 설치(총 90일2))를 진행한다]에 준하여 11월부터 자재 및 작업자가 투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이에 대해 피고 F는 2021. 10. 8. 원고에게 '㉠ 귀사는 현장설명서에 근거하여 2021. 11.

자재투입을 요청하셨으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납품기한이 2022. 7. 31.까지로

명기되어 있어서, 납품기한이 10개월 남아 있어 당사 공정을 감안할 경우 현재 발주 및 제작시점이

아니고, 따라서 귀사에서 요청하신 2021. 11. 현장투입은 물품제작이 되지 않았기에 불가하다. 다만, 이후 양사 간 원만하게 투입 일정 협의가 진행된다면 제작 및 현장투입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하는 한편, '2021. 1.부터 해당 공정의 원자재(철강류)가 급등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요청하며, 조정요청금액은 130,9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③ 원고는 2021. 10. 14. 원발주처에 피고 F와의 원자재 급증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관하여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원발주처는 2021. 10. 18. 원고에게 '본 건은 하도급법에 의한 원·하도급자 간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라고, 사업시행자인 당사와 귀사는 원칙적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없는 것이니 이에 대한 계약조건을 참고하시길 바란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④ 원고와 피고 F는 2021. 10. 28.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진행일정 및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하여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때 원고는 2022. 5.말 건축 사용검사를 예정하고 있어서 현장설명서에 언급된 바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자재를 투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하여는 발주처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조정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 F는 계약서상 납품일이 2022. 7. 31.이므로 빠른 시일 내 착공은 어려우나, 원고의 일정에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할 경우 피고 F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계약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⑤ 원고와 피고 F는 2021. 11. 3. 다시 2차 업무협의를 하였다. 이때 피고 F는 '하도급대금 증가 금액은 130,000,000원으로 100,000,000원까지 조정 가능하고, 조정협의를 될 경우 2022. 2. 구정 이후 현장투입이 가능하며, 원고의 소방공정이 협조될 경우 2022. 4. 중에는 사용검사를 받아 필증교부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⑥ 원고는 2021. 11. 5. 피고 F에 '㉠ 귀사는 물품납품기한이 2022. 7. 31.까지로 현재 발주 및 제작시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22. 7. 31.은 본 건물 준공일을 의미하는 전체 공사기간이고, 본 공사의 착수시점과 완료기간은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다. ㉡ 원자재 상승에 따른 귀사의 추가공사비 요청 건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물가변동이 적용되지 않는 점, 계약 시 계약선급금을 지급한

점, 당사 또한 발주처에 추가공사비를 요청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한 점 등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나, 조속한 공정 진행 및 원·하도급 간 상생 차원에서 귀사의 최초 요구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65,000,000원을 수용하고자 하오니,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⑦ 이에 피고 F는 2021. 11. 9. 원고에게 '귀사에서 제안해 주신 조정수용금액은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당사는 양사 간 상호이견이나 조건 없이 원만하게 계약이 해제되기를 요청드린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⑧ 원고는 2021. 11. 12. 피고 F에 "계약 해제 및 소송 착수 예고 통지 건"이라는 제목으로 '2022. 7. 31.까지 사용검사 필증만 받으면 계약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귀사의 주장은 부당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물품대금 추가 청구도 계약 내용에 비추어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는 사업주체로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공사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귀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65,000,000원을 추가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100,000,000원을 고수하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 따라서 본 공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⑨ 피고 F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원고는 2021. 11. 23. 피고 F에 "공사이행요청 최종 통지 건"이라는 제목으로 '2021. 11. 30.까지 공사계약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그때까지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법원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⑩ 피고 F는 2021.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납품기한이 2022. 7. 31.까지로 정해져 있고, 현장 반입일(착공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원자재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한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무작정 가장 불리한 시기에 현장 반입(공사 착수)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므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조를 재차 요청드리며, 계약의 합의 해제, 해지를 포함한 원만한 해결방안에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고, 2021. 11. 30.까지도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⑪ 원고는 2021. 12. 7. 피고 F에 '2021. 12. 7. 현재까지 공사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행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제2호, 제6호 등의 사유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피고 F는 2021.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납품기한인 2022. 7. 31.까지 주차설비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가장 불리한 시기에 계약서상 특정되지 않는 현장 반입일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것은 적법한 해제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는 2022. 1. 7. 피고 F에 다시 "주차기기 납품 설치계약 해제·해지 통지건"이라는 제목으로 '2022. 7. 31.까지만 주차기기를 납품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부당하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나) 피고 F의 착공 지연의 정당성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납품기한이 2022. 7. 31.까지이므로 위 기한까지 주차기기를 설치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자재(철강류) 가격의 급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의 공사 착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F가 공사 착수를 거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앞서 판단한 대로, 이 사건 현장설명서 및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는 2021. 7. 1.경 원고가 요청하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에 자재를 반입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2. 7. 31.까지만 납품을 완료하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F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kg당 800원 정도이던 철강류의 가격이 2021. 5.경 급등하여 2021. 9.경까지 kg당 1,300원대로 유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3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계약체결 당시에 물가변동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계약이행 기간 중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현장설명서 중 일반시방서 제2조 제2항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며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을 검토하여 견적에 반영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원고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F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3조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호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2021. 1. 29.)과 이 사건 현장시방서 중 특기시방서 제12조 제7항에 따라 현장 자재 반입일로 예정되었던 2021. 7. 1.경 사이의 기간이 길지 않았고, 원고가 2021. 4. 7. 피고 F에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20% 상당액인 83,6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위 규정을 포함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 F가 협의하여 특수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수조건 제3조가 피고 F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피고 F에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 F가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의 근거로 삼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은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호는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10항은 '원사업자는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10. 28., 2021. 11. 3. 2차례에 걸쳐 피고 F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1. 11. 12. 피고 F에 공문을 통해 피고 F가 최초 요구한 금액 중 65,000,000원을 증액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하도급법 제16조 제10항에 따른 조정 협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F가 하도급대금 증액 필요성을 이유로 공사 착공을 지연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해제의 의사표시 원고가 2021. 11. 23.자 공문을 통해 '2021. 11. 30.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 F가 2021. 11. 30.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피고 F의 귀책사유로 2021. 11. 3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F의 해제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피고들에 대한 계약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5조가 '피고 F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피고 F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원고에게 귀속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피고 F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인 41,8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F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착공을 지연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F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 4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F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4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F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금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3항이 '피고 F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피고 F가 지급받은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21. 4. 7. 피고 F에 선금금 83,6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F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2021. 11. 30.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약정이자를 별도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3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선금금 83,6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의 발생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5조 제1항에서 '피고 F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 지체된 부분에 상응하는 물품가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은 0.1%인 사실, 이 사건 현장설명서 중 특기사항 제6조 제2항은 '피고 F의 계약공정표의 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공기지연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F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2021. 7. 1. 이후로서 원고가 정한 자재 반입일인 2021. 9. 27.에 자재를 반입하는 등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차기기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F는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납품기한인 2022. 7. 31.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2021. 7. 1. 이후로서 원고가 정한 자재 반입일 및 그로부터 90일 간의 설치 일정 등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 F가 위 2021. 9. 27.을 지나 2021. 11. 30.까지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체일수 가) 당사자의 주장

감정인은 '피고 F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공사기간이 당초 완공예정일인 2022. 8. 31.에서 실제 사용승인일인 2022. 11. 11.까지로 72일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F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은 위 72일에 관하여 계약금액 418,000,000원 및 지체상금률 0.1%를 적용하여 산정한 30,096,000원(= 72일 × 418,000,000원 × 0.1%)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지체일수가 72일이라는 전제로 지체상금 30,096,000원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 F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공사기간이 72일이 지연되었다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은 한 점의 의심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7, 24, 25, 28, 29호증, 을 제8에서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를 72일로 반영함이 타당하다.

(1)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감정인이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지체일수로 산정한 72일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 지체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① 감정인은,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예정준공일이 2022. 8. 31.이었으나, 실제 사용승인일이 2022. 11. 11. 이루어져 공사기간이 72일 동안 지연되었으며, 이는 피고 F의 착공 지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위 72일을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로 반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체일수는 원도급계약이 아니라 하도급계약의 공사가 지연된 일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감정인이 산정한 원도급공사 지체일수를 곧바로 하도급공사 지체일수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피고 F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제 통지를 한 뒤, 2021. 12. 22.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8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21. 12. 22.부터 2022. 5. 15.까지(주차기기 설치공사는 2022. 3. 31.까지 완료, 완성검사는 2022. 5. 15.까지 취득), 납품기한은 2022. 2. 20.까지 자재 현장 반입으로 정하여 후속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194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지정한 2021. 9. 27. 피고 F가 현장에 자재를 반입하였다면, 이 사건 현장설명서 중 특기사항 제12조 제6항에 따라 위 일자로부터 90일 뒤인 2021. 12. 25.경 설치를 완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F의 착공 지연으로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인 H와 후속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후속 하도급계약상 설치공사 완료일은 2022. 3.

31.까지이다. 이때 위 설치 완료 예정일 다음 날인 2021. 12. 26.부터 2022. 3. 31.까지의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인데,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산정한 지체일수 72일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지체일수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 F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가 자재 반입일로 지정한 2021. 9. 27.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된 2021. 11.

30.까지의 기간도 약 2개월이 넘는다. 이 또한 감정인이 산정한 지체일수 72일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인이 피고 F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공사기간이 72일 지연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는 피고 F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감정인은,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당초 공사기간은 2020. 7. 1.부터 2022. 8. 31.까지였고, 당초 공사예정공정표상 주차기기 설치공사가 2021. 8. 중순에 착수하여 2021. 10. 31. 완료한 뒤 엘리베이터 이설공사는 2022. 1. 착공하여 2022. 8.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착공 지연 및 타절로 인해 후속 공정들이 지연되어 원도급공사의 공사기한이 2022. 8. 31.에서 2022. 11. 11.까지로 72일 지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정인은 2024. 6. 26.자 피고 측 2차 감정보완 회신에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원도급 공사의 어떤 공정이 지연되었는지에 관하여 '① 지하철 엘리베이터 연결 공사를 하게 되면 전면 진입로 부분의 전체

터파기 및 가시설 공사로 인해 건물 내 대형 자재 반입이 불가하여 주차기기 설치공사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설명서 및 공사예정공정표에 주차기기 설치공사를 지하철 엘리베이터 연결 공사에 선행하여 수행하도록 공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② 주차기기 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자재를 반입하는 동선 내에 있는 공간과 지하 2층에 자재를 야적하고 작업을 하는 공간에 관하여는, 바닥, 벽체, 천정 등 건축마감공사와 전기, 설비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선행공정인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후속공정들이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피고 F는, 감정인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착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원도급 공사의 지연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2021. 7. 25. 감리자가 작성한 공정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지상 15층을 진행하고 있는 등 골조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고, 계획공정률이 42.36%인데 반하여 실행공정률이 40.28%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2021. 9. 25. 감리자가 작성한 공정확인서에는 계획공정률이 53.18%인데, 실행공정률이 50.57%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당초 공사예정공정표상 골조공사 완료시점은 2021. 8. 15.경이었고, 원고는 2021. 5.경 감리단에 제출한 변경 공사예정공정표에서 공사진행 현황을 반영하여 골조공사 완료시점을 2021. 9. 15.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실제로 2021. 9. 13.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때 변경 공사예정공정표에는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준공일이 당초대로 2022. 8.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이전에 수행된 골조공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2021. 8. 31.부터 2022. 11. 11.까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 또한, 감정인은 2024. 6. 26.자 피고 측 2차 감정보완 회신에서 '공사 진행 중에는 날씨,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사인력 수급, 작업시간 확보의 어려움,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인한 자재수급 어려움, 주변 민원 등 공기지연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감정인이 이 사건 원도급 공사가 72일 지연되었다고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는지'에 관한 피고 측 질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소가 골조공사 진행 중 약간의 영향이 있었으나, 공사계획 일정에 맞춰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골조공사 완료 후 주차기기 설치공사가 계약이행을 전혀 하지 않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위 요소들은 지연

사유에 그다지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피고 F는, 감정인이 H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연장된 공사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속 하도급계약상 H는 2022. 2. 20.까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공사는 2022. 3. 31.까지 완료하며, 완성검사는 2022. 5. 15.까지 마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H는 2022. 5.경 주차기기 자재를 반입하여 설치를 시작하였고, 2022. 6.경 주차기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후속공정인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는 2022. 6. 20. 원고에게 '2022. 4. 6. 계약하여 현재까지 주차기기 설치공사 지연으로 작업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착수일자가 미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체결일(2021. 1. 29.)로부터 현장 자재 반입일(2021. 7. 1.)까지가 약 5개월, 현장 자재 반입일로부터 주차기기 설치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후속 하도급계약상 계약체결일(2021. 12. 22.)로부터 현장 자재 반입일(2022. 2. 20.)까지 약 2개월, 현장 자재 반입일로부터 주차기기 설치기간을 2022. 3. 31.까지 약 40일 정도로 정하고 있어서, 애초부터 후속 하도급계약상 설치일정이無理하게 짧게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미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연장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H가 계약상 설치일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지연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H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연장된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공사기간을 특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H의 공사 지연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설공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피고 F는, 감정인이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늘어난 공사기간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감정인은 2024. 1. 18.자 원고 측 감정보완 회신에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한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진행 중 3차례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도급 공사 계약금액이 당초 21,112,000,000원에서 23,846,300,000원으로 총 2,734,300,000원이 증액되었다. 공사금액이 이와 같이 증액되었다면

공사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설계변경 사유 등을 감안할 경우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착공 지연으로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공사비 중 피고 측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을 60%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㉔ 그러나 감정인은 2024. 6. 26.자 피고 측 2차 감정보완 회신에서 '설계변경 사항은 2021. 6.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전체 공정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사료된다'라거나, '설계변경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혀 판단되지 않고, 공사지연으로 인해 원고가 추가 부담한 공사비 중 60%만 인정한 것은, 원고가 하도급업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어렵게 합의한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명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의 부담 부분을 40% 정도로 반영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감정인의 2024. 1. 18.자 원고 측 감정보완 회신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종국적인 감정의견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도급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㉕ 피고 F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설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이 2022. 10.경에 이루어졌는데, 감정인이 이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은 2024. 6. 26.자 피고 측 2차 감정보완 회신에서 '엘리베이터 이설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은 당초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지하철 역사에서 창고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에 의해 철거하지 않고 존치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2022. 10.경 이루어진 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㉖ 그 밖에 피고 F가 주장하는 주변 민원, 준공준비 지연 등 다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원도급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 30,096,000원(= 72일 × 418,000,000원 × 0.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하도급업체 교체 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참조). 이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의 증가된 비용인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액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2항에서 '피고 F는 향후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시기 지연 및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본조 제1항의 지체상금과 별도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원고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 F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착공하지 않아, 원고가 2021. 12. 22. H와 후속 하도급계약(공사계약금액 588,500,000원)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그 공사대금(즉, 하도급업체 교체 비용)이 당초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418,000,000원)보다 170,500,000원 증가하였고, 감정인도 하도급업체 교체 비용에 관하여 '계약 체결 시 물가상승과 짧은 공기에 의한 돌관작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업체 교체 비용은 피고 F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3) 다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인 100,000,000원을 피고 F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도급업체 교체 비용 전부를 그 손해라고 보기 부족하다.

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kg당 800원 정도이던 철강류의 가격이 2021. 5.경 급등하여 2021. 9.경까지 kg당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 F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제 통지 직전까지 공사금액 증액을 논의 중이었다. 이때 피고 F는 130,000,000원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65,000,000원의 증액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만일 피고 F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지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② 감정인의 감정 결과만으로 하도급업체 교체비용 중 돌관작업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앞서 본 대로 후속 하도급계약은 2022. 2. 20. 현장에 자재를 반입하고, 2022. 3. 31.까지 주차기기 설치공사를 완성할 것을 정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2022. 5.경 자재 반입이 이루어지고, 2022. 6.경 주차기기 설치공사가 완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H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하도급업체 교체 비용에 돌관작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 F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하도급업체 교체 비용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원도급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2항에서 '피고 F는 향후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시기 지연 및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본조 제1항의 지체상금과 별도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원고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은 ①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해 연장된 원도급공사 기간(2022. 9. 1.부터 2022. 11. 11.까지) 동안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간접노무비 및 경비 합계액을 293,887,39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하고, 그중 피고 F의 책임 비율을 60%로 인정하여, 피고 F의 부담 부분을 176,332,000원(= 293,887,390원 × 60%, 천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한 사실,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원도급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하도급업체들에 추가로 지급한 인건비 등 추가 하도급 공사비를 합계 310,977,533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하고, 마찬가지로 피고 F의 책임 비율을 60%로 인정하여, 피고 F의 부담 부분을 186,586,519원(= 310,977,533원 × 60%)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일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다른 공정이 지연되어 원수급사인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인 통상손해에 해당하고, 피고 F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F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위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인 위 비용의 합계액 362,918,519원(= 176,332,000원 + 186,586,5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F는, 감정인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지연과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한 비용을 모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지연으로 인한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하도급 공사비로 반영된 '기술지원비' 10,345,799원은 추가 공사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F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공사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F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 추가 간접노무비 및 경비 관련

① 피고 F는, 감정인이 K 외 6명에 관하여 2022. 9. 1.부터 2022. 9. 30.까지의 임금을 간접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은 2024. 6. 26.자 피고 측 2차 감정보완 회신에서 피고 F의 위 주장에 관하여 '주차기기 설치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공사예정공정표에 준하여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을 득했다면 발생할 비용이 아니므로, 전체 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K외 6명에 대한 급여명세서(갑 제23호증의 30, 31, 32)에 현장명이 이 사건 원도급 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위 7인의 임금을 추가 간접비로 인정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피고 F는, 원고가 설계변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증액될 때 원발주처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감정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F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 하도급 공사비 관련

① 피고 F는, 감정인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로 인하여 어떠한 공사가 연장되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비용이 증가한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 없이 공사비를 합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변경계약합의서나 정산합의서 등을 검토한 뒤, 2024. 1. 18.자 원고 측 감정보완 회신 18쪽 표에 기재된 각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각 '합계'란 기재 금액만큼 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감정인의 감정 방식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피고 F는 추가 공사비 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감정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감정인이 설계변경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F의 책임 부분을 60%로 한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분이 고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피고 F는 H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설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엘리베이터 이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는 피고 F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가 후속 하도급 계약상 공사 일정에 맞추어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이미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설공사 등 후속 공정들이 지연된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H의 공사 지연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설공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사정은 책임의 제한 부분에서 고려한다.

④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공사비에 관한 근거자료인 정산합의서 등에는 추가 공사비의 내용,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감정인은 이에 관하여 2024. 6. 26.자 피고 측 3차 감정보완 회신에서 '정산 합의 시 단순 물량의 증감 또는 신규항목은 수량, 단가를

명확하게 반영해 정산을 하나, 단일 사항이 복합적인 여건으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때 인건비, 자재비, 운반비, 자재이동, 지게차비, 폐기물처리비, 기타경비 등 각 항목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1식 개념으로 반영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각 협력업체가 작업할 시기에 제대로 작업할 수 없어 발생한 손실 요구 금액을 수용할 수 없어 수차례 협의를 통해 어렵게 합의해서 정산한 사항이다. 주차기기 설치공사 지연으로 각 공정이 계속 공사를 하지 못하고 철수 후 재투입 등으로 발생한 손실이 명확하다고 판단되고, 정산 합의된 금액은 임의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합의하여 결정한 금액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 F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로 반영된 '기술지원비' 비용 10,345,799원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지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사 관련 기술지원비 정산내역서에는 지원일수가 당초 180일이었으나, 2022. 7. 11.부터 2023. 1. 31.까지 205일 간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추가 납부금액이 10,345,799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3호증의 26). 이처럼 연장된 기술지원 기간이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준공일 이후이고, 달리 위 기술지원 기간 연장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추가 납부금액 10,345,799원 중 감정인이 피고 F 부담 부분으로 인정한 6,828,226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1,380,378원 × 6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추가공사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피고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결국 피고 F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 하도급업체 교체 비용 중 일부인 100,000,000원, ㉡ 간접공사비 및 경비 176,332,000원, ㉢ 추가 하도급 공사비 179,758,293원(= 186,586,519원 - 6,828,226원)의 합계액인 456,090,293원이 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설계변경이나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선행공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와 후속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H가 계약상 현장 반입 일정, 설치 일정 등을 준수하지 못하였고(원고의 2024. 6. 17.자 준비서면 11쪽에는 '당초 2020. 3. 31. 완료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후속업체 선정과 그로 인한 준비시간 부족, 제작 공장 직원들의 집단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지가 15일 발생하는 등으로 공사가

지체되었다'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기간 연장이나 추가 공사비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③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나, 감정인의 비용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감정인이 감정서 및 각 감정보완 회신에서 당사자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아 피고 F로서는 감정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의 책임을 손해배상금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F가 추가 공사비에 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은 273,654,175원(= 456,090,293원 × 60%)이 된다.

라.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금의 관계

1)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 원고는 앞서 본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임을 전제로 지체상금 및 추가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139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6조 제1항이 '피고 F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원고에게 귀속한다'라고 정하는 한편, 제15조 제1항은 '피고 F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지체된 부분에 상응하는 물품가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피고 F는 향후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시기 지연 및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본조 제1항의

지체상금과 별도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원고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되,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2888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위약별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6조 제1항은 피고 F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정하면서도, 계약보증금을 위약별로 한다거나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기한 준수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F로부터 지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것에 더하여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보증금을 별도로 몰취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지체상금 규정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당연히 위약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각 조항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여 볼 때, 피고 F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 중 계약보증금 범위 내의 손해는 계약보증금의 몰취로 그 배상에 갈음하고, 원고가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증명하여 청구하는 경우 피고 F가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6조 제1항을 피고 F에 계약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중복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위약별로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되, 다만 피고 F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 및 추가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합계액이 303,750,175원(= 30,096,000원 + 273,654,175원)으로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므로, 결국 단순한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F를 상대로 지체상금 및 추가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계약보증금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계액 303,750,175원에서 계약보증금 41,80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261,950,175원만을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6. 최종적인 지급의무의 범위

가. 피고 F는 원고에게 선급금 반환금 83,600,000원, 계약보증금 41,800,000원,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금 중 계약보증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61,950,175원의 합계액인 387,350,175원 및 그중 선급금 반환금 83,6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은 2021.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2.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계약보증금 41,8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261,950,1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2. 16.부터 피고 F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피고 F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중 계약보증금 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수

판사서하나

판사신진경

- 1) 기존에 외부(인도)에 있던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하여 1호선 J 지하철역과 연결하는 공사이다.
- 2) 80일의 오기로 보인다.